

인천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나59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나599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152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변론 종결 2020. 10. 13.

판결 선고 2020. 12. 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152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33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촌형이다.

나. 피고는 2007. 12. 6. 인천 중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여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2. 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에게 200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665호(본소),

2018가단212114호(반소)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급여 지급은 이 사건 여관의 운영 종료 시에 10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09. 4. 29.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위 여관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D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대한 월 이자가 3,70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07. 12.부터 2009. 4.까지 17개월간의 이자 합계 62,900,000원(= 3,700,000원 × 17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3.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여 수익을 가져가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와 위 여관 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잔금인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나56305호(본소), 2019나56886호(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 역시 2020. 6. 4.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20다244825호(본소), 2020다244832호(반소)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0. 10.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7, 8,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07. 11. 23.부터 2009. 4. 29.까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1) ① 원고는 2010. 11.경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의 매도차익이나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반 이상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는 셈 치고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여관의 관리인을 고용하되 그 급여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되면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실장 E에게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③ 변호사 보수로 5,500,000원, ④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창고 등 공사비로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돈 합계 75,500,000원(= 25,000,000원 + 35,000,000원 + 5,500,000원 + 1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의 관리자로서 위 돈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촌동생인 원고와 사이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원고를 도와줄 목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가져가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위 여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① 이후 피고가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I 소유인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면서 I의 미지급 교환대금 150,000,000원을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으로 하되 이후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가 이를 I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자이자 원고의 딸인 J이 I의 모친이자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6000호)를 제기하여 조정을 통해 G으로부터 57,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2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150,000,000원 ~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직접 E를 고용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이 위 J이 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창고 등 공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측에서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관리인이었던 E에게 2010. 11. 23.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급여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경 변호사 보수로 5,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09.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에게 200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4,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9. 4. 29.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I 소유인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I의 모친인 G과 원고의 딸인 J 사이에 2009. 4. 29. J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J은 2010. 4. 21.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6000호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 2.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본의 아니게 경솔하게 일을 벌려 죄송합니다. 형님 많은 반성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8. 2. 23. 인천지방법원에 제1의 마.항 기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가져가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위 여관 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75,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가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여관의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주겠다면서 이 사건 여관의 관리를 맡겨 원고가 위 여관을 관리해온 것이라면 굳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나 여관 공과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② 만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여관을 관리해온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여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관련 수익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수익금도 모두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④ 나아가 원고는 J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로서 2010. 11. 22.경까지 위 건물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E을 이 사건 여관의 관리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위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창고 등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타채2726호), 위 법원은 2020. 2. 2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3. 3. 주식회사 M으로부터 29,338,040원을 추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제4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므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338,0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20. 3. 4.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소영

판사임진수

판사신정수